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78 호 2021. 2. 18.(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7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8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30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96호[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20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2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곡읍**길 12*

3. 점용 목적 및 개요

가설도로 개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곡동 1032-1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일시 1,714㎡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21. 2. 15. ~ 2021. 5. 1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21.02.16.	제2021 -2호	박옥희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65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956번지	10	2021.02.17. ~ 2021.06.16.	건물산축공사를 위한 가설비계설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 - 2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창좌1길 21-8	시례동 21-5	2021. 2. 18.	건축물 멸실
진장23길 8	진장명촌지구 2B 12L	2021. 2. 18.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90)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2.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30호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공원녹지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하천시설의 점용(대규모 꽃단지 파종)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화봉동 1327번지 외 1개소

나. 면적 : 일시 18,200㎡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일시 : 2021. 2. 16. ~ 2021. 5. 3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96호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안전”, “안전문화 진흥” 등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 라. 구청장의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6조)
-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바.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및 제15조)
- 사. 안전교육 예산 확보 및 지원, 포상 근거(안 제9조 및 제17조)

3. 근거법령

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복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국민의 태도와 행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참여)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9.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단체 활동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 - 204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 이유

- '20. 11. 10.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로 우리 구 치안 관련 소관 경찰서가 변경됨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위·해촉권자 개정(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 본문)
- 협의회 사무처리 소관 경찰서 개정(안 제9조제2항)

3.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주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은”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부경찰서”를 “북부경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